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0] <개정 2021. 10. 14.>

검사원의 교육내용 및 방법(제93조제2항 관련)

1. 교육내용

가. 신규교육

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내용
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	20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· 자동차 관련 법령(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 등) · 검사소 지도점검 및 부실검사 사례(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) ·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·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· 자동차검사 및 정비관련 신기술 ·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
자동차 검사기기	5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·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 및 방법
자동차 검사실무	10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검사실습(첨단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) 및 행정관리 요령

나. 정기교육

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내용
인성교육 및	8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

자동차 관련 법령		본지식 및 자세 함양 • 자동차관리법령 • 검사소 지도점검 및 부실검사 사례(처분조항 및 사례포함) •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•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• 자동차검사 및 정비관련 신기술 •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
자동차 검사기기	2시간 이상	•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•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처리방법
자동차 검사실무	4시간 이상	• 검사실습(첨단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) 및 행정관리 요령

2. 교육방법

교육과목	교육방법
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	이론교육
자동차 검사기기	이론 및 실습교육
자동차 검사실무	

비고

1. 자동차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교육이 50%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.
2. 신규교육은 4시간 이상,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.